

의안번호	2207863
의 퇴 인	최수진 의원
회 답 일	2025. 2. 18.
추 계 번호	25F0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한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2035년까지 총 9년간 총 17억 원(연평균 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5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34'	'35	누적	연평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21조의22 제1항 제1호)	0.9	1.7	2.6	3.0	3.4	2.6	1.7	0.9	0.4	17.2	1.9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21조의22 제1항 제1호)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21조의22 제1항 제1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2026~2030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27~2035년까지 발생
-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감면 전망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최근 5년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동 규정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므로 연평균 실적에 '1/4'를 곱하여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연 단위 발생액(100% 감면기준)을 계산하고, 향후 세수효과를 계산
 - 신규 입주기업의 연 단위 감면액(100% 감면) = 11억 원×1/4 = 2.75억 원

[표 2]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배분

	'27	'28	'29	'30	'31	'32	'33	34'	'35
2026년 입주									
2027년 입주									
2028년 입주									
2029년 입주									
2030년 입주									

주:  는 100% 감면,  는 50% 감면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최근 5년간('19~'23) 첨단의료복합단지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으로 첨단 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비중은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 된다고 가정
 - 「국세통계포털」 상 최근 5년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31.2%)을 사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2019년 1.2억 원, 2022년 15억 원으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16.2억 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2020년 9.3억 원 등 4년간 연평균 9억 원의 감면실적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35.8억 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발생빈도는 적으나 발생금액은 16.2억 원으로, 동 규정의 법인세 감면에 대하여 최근 5년간 감면실적 금액 비중은 31.2%로 상당하므로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첨단의료복합단지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보건의료기술 사업 또는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감면대 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 상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실적은 2020년 9억 원, 2024년(잠정) 11억 원 수준
 - 2011.12.31.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2019년부터 감면실적이 발생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2019년 1.2억 원, 2022년 15억 원 총 16.2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경우 2020년 9.3억 원, 2023년 6.5억 원 등 4년간 총 35.8억 원의 감면실적 발생

[표 3]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실적: 법인세 및 소득세, 2019~2024년
(단위: 억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¹⁾
조세지출예산서		1.2	9	11	24	7	11
국세통계포털	첨단의료	1.2			15 ²⁾		
	국가식품 ³⁾		9.3	11	9	6.5	
	소계	1.2	9.3	11	24	6.5	

주: 1) p는 잠정실적
 2) 국세청 별도 확인 결과
 3)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및 제외 대상 모두를 더한 값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보건의료기술 사업 또는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2024년 감면 전망액(11억 원)이 향후 5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연간 감면액으로 환산하여 시점별 배분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11억 원 × 1/4 = 2.75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표 4]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34'	'35
2026년 입주	2.75	2.75	2.75	1.38	1.38				
2027년 입주		2.75	2.75	2.75	1.38	1.38			
2028년 입주			2.75	2.75	2.75	1.38	1.38		
2029년 입주				2.75	2.75	2.75	1.38	1.38	
2030년 입주					2.75	2.75	2.75	1.38	1.38
합계	2.8	5.5	8.3	9.6	11.0	8.3	5.5	2.8	1.4

주: □는 100% 감면, ▨는 50% 감면

□ 연간 감면액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비중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연도별 전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추정치에 감면액 비중(31.2%)을 곱하여 산출

[표 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추정치: 2027~2035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34'	'35
전체 입주기업 감면액	2.8	5.5	8.3	9.6	11	8.3	5.5	2.8	1.4
첨단의료 입주기업 감면액	0.9	1.7	2.6	3.0	3.4	2.6	1.7	0.9	0.4

(3) 추계결과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2035년까지 총 9년간 총 17억 원(연평균 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34'	'35	누적	연평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21조의22 제1항 제1호)	0.9	1.7	2.6	3.0	3.4	2.6	1.7	0.9	0.4	17.2	1.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